

마스트리트 合意와 유럽의 經濟·通貨同盟

金 世 源

지난 12월 마스트리트에서 개최되었던 EC 頂上會談에서 1999년 經濟·通貨同盟의 完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1992年 計劃'에 이어 EC에 의한 經濟統合의 완성을 위한 최종단계로 들어섰다. 本稿에서는 經濟統合의 태두리 내에서 이번 합의가 갖는意義와 經濟·通貨同盟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3단계로 구성되는 同 同盟에 따르면 1994년 출발하는 제 2 단계부터 회원국간 財政·通貨政策의 운영에 있어서 협력과 접근이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라 거시경제적 지표도 보다 수렴될 전망이다. 늦어도 1999년부터 실현되는 제 3 단계에서는 유럽中央銀行制度와 유럽中央銀行으로 대표되는 共同體機關에 의하여 단일의 共同通貨政策이 수행되고 檢率이 고정됨은 물론 ECU가 共同通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는 하나 회원국간 경제적 성과의 조화 또는 經濟主權의 소민 및 EC 관료주의에 대한 우려 등 허다한 문제가 가로 놓여 있다.

I. 머 리 말

지난 1991년 12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經濟·通貨同盟(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완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EC에 의한 경제통합은 이제 최종단계로 들어섰다.

1958년 EEC가 출범한 이래 12년간 과도기간을 거치면서 關稅同盟을 이룩하였고 共同市場과 經濟同盟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후 市場統合의 작업은 부진하였고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율의 失業을 극복하려는 회원국들의 國內的 관점으로 인하여 EC에 의한 共同政策의 실현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것이 '1992년 計劃'이며 동 계획의 취지는 당시까지 國別로 수행되어 오던 經濟·產業政策의 틀에서 벗어나 EC 차원에서 市場統合의 완결을 통하여 경제적 활동(dynamism)을 유도하자는 마지막 선택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金世源 (1990, p. 173)].

이 1992년 計劃은 두 가지 다른 접근에 의하여 뒷받침되었으며 또 이를 자체는 당초 EEC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유럽통합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는 데 그 意義가 있다. 하나는 經濟·통화통맹이며 또 다른 하나는 政治同盟(EPU: European Political Union)이다. 前者가 통화통합을 중심으로 한 經濟統合의 완성에 그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면 後者の 경우 外

交・防衛, 경제・사회적 결속(cohesion) 및 產業政策面에서 회원국간 공동보조의 추구를 취지로 하므로 보다 유럽 社會・政治統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Conseil Européen de Maastricht(1991) 참조].

지난 유럽理事會에서는 경제・통화통맹과 관련하여 1957년의 로마條約을 대폭 수정하는 개정안과 새로운 유럽政治同盟條約이 채택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회원국들의 비준과정을 거쳐 1994년부터 발효할 예정인데 본고에서는 經濟・通貨同盟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經濟統合의 論理的 體系

1958년 EEC의 설립에 기초가 된 로마條約을 가리켜 보통 포괄 條約(cadre treaty)이라고 부른다. 경제통합을 위하여 기반이 되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條文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에 따라 회원국간 합의나 共同體 機關들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여지를 남기고 있다.

로마條約이 과도기간 동안(1958~69) 이룩해야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통합부문으로서 關稅同盟, 共同貿易政策, 共同農業政策 그리고 城內 生산물 및 生産요소의 이동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 등이다.

한편 다른 경제・사회정책에 있어서 로마條約은 회원국간 협의, 협력, 조정, 접근 또는 통일, 나아가 공동정책 등을 추구한다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主權國家間 經濟統合’이라는 史上 유례없는 방대한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예측하기도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일반적인 용어들을 빌리는 것은 여전의 변화나 작업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단계별로 실현하자는 의도를 반영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EC에 의한 經濟・市場統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하나는 소극적 統合(negative integration)으로서 회원국간 차별대우의 철폐이다. 域內 상품 및 生産요소의 이동과 관련하여 무차별(non-discrimination)대우의 適用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별 국적에 따르는 차별대우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차별대우를 제거하는 것 만으로는 資源配分의 最適化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동시에 각 회원국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制度, 政策 및 조치들 자체가 상이한 태서 발생하는 市場歪曲(market distortions)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비록 상품의 이동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회원국간 間接稅政策에 있어서 차

이가 있다면 域內 地域別로 동일 상품에 있어서 가격격차가 불가피해진다. 이와 같이 회원국간 경제·사회정책의 조정, 접근 및 통일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積極的 統合(positive integration)이라고 한다.

1985년 6월 執行委員會가 각료이사회에 제출한 白書 [Commission of the EC(1985)]에 따라 발표된 소위 '1992년 計劃'은 이 두 가지 統合의 형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은 아직껏 회원국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장벽을 物理的(physical), 技術的(technical) 및 租稅的(fiscal) 장벽의 세트으로 분류하고 1992년까지 이들을 철폐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¹⁾

반면, 이번 합의에 따른 通貨同盟은 보다 적극적인 통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반적인 경제통합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로마條約은 통화통합과 관련된 하등의 규정을 갖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회원국간經濟政策의 조정과 換率制度에 대한 협의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는 通貨委員會(Monetary Committee)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동 위원회는 회원국내 金融·通貨動向의 추이를 분석한 후 市場統合의 발전에 필요한 견의를 제의하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EEC가 설립된 후 1960년대 중반 國際通貨體制가 불안을 거듭하고 金-달러 및 固定換率制가 위기를 맞기 시작하자 금융·통화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또 이론적 접근도 대두되었다. 특히 1970년대초 브레튼우즈體制가 붕괴되면서 대부분 선진제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자 EC 회원국들간 금융·통화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공동보조가 불가피하게 되었다.⁽²⁾

통화통합을 주장하는 논거는 단순히 經濟統合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이 외에도 그 利點으로서 주로 去來費用의 감소, 不確實性의 제거 및 규모의 경제적 이익 등을 지적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여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通貨統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1980년대 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회원국들이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하여 상호 성장, 물가 및 국제수지 등 제 巨視的側面에서 경제적 성과가 크게 격차를 보였고 또 이에 따라 政策的調整을 기대하기 곤란하였다.

(1) 1992년 計劃과 관련된 중요 자료로서는, Boccaro(1988), Devinney and Hightower(1991), Jacquemin and Sapir(1989), Mattera(1988) 등이 있음.

(2) EC의 金融·通貨統合에 있어서 이론적 배경은 Krauss(1972), Magnifico(1973, 1974), Johnson and Swoboda(1973), Fair and de Boissieu(1988), Molle(1990) 등을 참조하기 바람.

(3) 어떤 의미에서는 通貨統合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최적통화지역이론을 들 수도 있다. Mundell (1973, p. 177).

기 때문이다.

3. 經濟·通貨同盟의 推進過程

이미 지적하였듯이 EC에 의한 經濟統合이 通貨同盟의 설립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계기는 과거 브레튼우즈體制의 붕괴라는 현실적 여건과 직접 연결된다. 즉 국제통화체제의 동요와 함께 회원국들이 變動換率制로 이행하게 되자 EC 수준에서 환율변동폭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각국이 자의로 換率政策을 수행할 경우 商品 및 生產要素市場에서 強烈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특히 공동가격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는 共同農業政策의 운영은 차질을 빚게 된다.

시기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초는 국제적으로는 스미소니언 체제의 성립, 金-달러 체제의 종언 및 變動換率制度의 등장, 그리고 EC의 입장에서는 과도기간 이후 새로운 통합진로의 모색과 그 때를 같이 한다.⁽⁴⁾ 이에 크게는 通貨協力接近(monetarist approach)과 經濟協力接近(economist approach)이 등장하였고 베르너(Werner)보고서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前者에 보다 비중을 두는 經濟·通貨同盟案을 제시하게 되었다.

同案에 따라 한 때 ‘Snake in the tunnel’ 제도가 채택되었으나 오래 가지 못하고 1973년에 EC는 共同變動換率制度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유파동과 잇따른 경기침체 및 국제수지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 회원국이 1970년대 후반까지 동 제도를 이탈할 수 밖에 없었다.

1979년에 출범한 유럽通貨制度(EMS)는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경제·통화동맹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은 총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종합된다 [Artis(1990, p. 304) 참조].

첫째는 金-달러 스왑으로서 참가통화당국이 자국의 금과 달러 준비의 20%를 유럽通貨協力基金(EMCF: 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과 스왑을 통하여 公的 유럽通貨單位(ECU)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둘째, ECU 통화바스켓의 구성에 GDP 및 무역규모 등을 고려한 가중치에 따라 각국 通貨價値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ECU는 현재 회원국 통화가치의 기준척도, 기준지표, 계산단위, 介入通貨, 공적 결제수단뿐만 아니라 민간거래에서도 일부 활용되고 있다.

셋째, 自國通貨價値를 對 ECU 환율범위 내로 안정시켜야 하는 환율메커니즘(ERM;

(4)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脚註 (5)에 열거된 문헌들 이외에도 金世源(1990, p. 106 이하) 참조.

Exchange Rate Mechanism)을 들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 각 통화의 환율변동 허용폭은 ECU 中心率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각 2.25%로 제한되어 있다.

1985년前述한 '1992년 計劃'이 발표되고 이 계획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法・制度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년 이래 최초로 로마條約의 내용적인 개정을 의미하는 유럽單一議定書(Single European Act)가 제정되었다. 동 議定書는 市場統合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의 제거 이외에도 회원국간 巨視政策의 운영에 있어서 조정과 접근을 강조하고 특히 통화정책의 통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1989년 각료이사회에 제출된 執行委員會의 보고서 [Commission of the EC(1990)]는 그간 經濟・通貨同盟의 수립을 위한 EC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번 마스트리트(Maastricht)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본 내용의 기초가 되었다. 일명 드로르(J. Delors)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동 제안은 통화통합의 핵심인 회원국간 通貨政策의 接近, 外貨準備의 공동 풀, 단일 中央銀行의 창설, 및 共同通貨의 창출 등을 단계별로 전의하고 있다 [El-Agraa(1990, p. 98), 李天杓(1990, p. 88 이하)].

동 보고서는 우선 제 1 단계에서는 모든 EC 회원국이 EMS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기간 각국 中央銀行間 協力의 강화와 通貨政策에 있어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제 2 단계에 이르러 執行委員會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회원국간 예산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진밀한 協助를 취할 것을 提案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유럽中央銀行制度(ESCB: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의 설립을 전의하고 있다. 이 단계부터 각국간 換率調整이 점진적으로 보다 제약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 3 단계에서는 執行委員會가 회원국 예산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고 나아가 환율이 완전히 고정됨으로써 단일통화 창출의 기반이 마련된다.

드로르報告書가 제출된 이후 경제・통화동맹의 설립을 위한 EC 정부간 회의가 구성되어 1990년 말부터 정규모임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간 이견이 조정되었는데 지난 마스트리트 合意는 총체적으로 동 보고서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그 이외 대다수 회원국의 공통입장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4. 段階別 經濟・通貨同盟의 完成

마스트리트 合意에 의하여 經濟・通貨同盟의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EEC條約의 개정이 수반되었는데 동 동맹의 궁극적인 형태가 회원국간 환율의 고정, ECU라는 單一通貨

의 창출 그리고 單一 通貨政策 및 換率政策의 수행에 있다는 점이 명백히 규정되고 있다.⁽⁵⁾ 또 이와 같이 경제·통화동맹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物價安定, 전진한 財政·通貨 여건의 조성 및 국제수지의 균형이라는 공동목표의 추구에 있다.

‘改正文’ 第4條는 동 동맹의 운영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이미 지적한 유럽中央銀行制度(ESCB)와 유럽中央銀行(ECB)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SCB는 새로 설립되는 ECB와 회원국 중앙은행들로 구성되는데 ECB의 의사결정기관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된다.⁽⁶⁾

‘改正文’은 무엇보다도 회원국간 경제정책의 조정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료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회원국 및 공동체의 經濟政策 수행과 관련된 共同指針을 설정하고 긴밀한 정책적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거시경제적 成果가 회원국간에 수렴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특히 財政政策에 있어서는 상세한 규정과 부속의정서를 갖고 있는데⁽⁷⁾ 그 이유는 동 부분이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財政狀態와 財政赤字 累積을 감시해야 하는 데 ‘과도한 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의견을 각료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료이사회는 加重投票制(weighted voting system)⁽⁸⁾에 의하여 해당 회원국 정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 赤字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동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규제중 1개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국은 公債 및 증권을 발행하기 이전 각료이사회가 결정한 違加的인 情報를 공표해야 한다.

(2) 유럽投資銀行(EIB)은 해당국에 대한 貸出을 再考해야 한다.

(3) 해당국은 적절한 규모의 금액을 共同體에 무이자로 예치해야 한다.

(5) Commissim of the EC, Amendments to the EEC Treaty, Economic and Monetary Union, as Agreed in the European Council of Maastricht on 10 December 1991(이하 ‘改正文’으로 略함), 第3條.

(6) 여기서 의사결정기관들이란 관리이사회(Governing Council)와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를 말하는데 전자는 집행이사회 위원들과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된다. ‘改正文’ 第106條 참조.

(7) 예로 신설된 ‘改正文’ 第104條 B는 14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 가중투표제란 각료이사회의 안전책에 있어서 회원국별로 상이한 투표권을 행사케 하는 제도이다. 즉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및 영국 각 10표, 벨기에, 네덜란드, 포루투칼 및 그리스 각 5표, 스페인 8표, 덴마크 및 에이레 각 3표, 그리고 룩셈부르크 2표인데 만일 안전이 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될 경우는 54표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2개국중 8개국 이상의 찬성과 54표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의결된다.

(4) 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美國의 연방준비제도(FRS)에도 비교될 수 있는 ESCB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目標는 物價安定에 있으며 이러한 목표의 범위 내에서 共同體의 설립취지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기능으로서는 공동체의 通貨政策 수립 및 운영, 外換操作의 관리, 회원국 公的外貨準備의 보유 및 관리 그리고 決濟制度의 원활한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공동체 내에서는 ECB와 회원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은행권만이 유일한 法定通貨로서 인정되는데 ECB의 경우 ECU라는 共同通貨를 발행함은 물론이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공동체내 각종 은행권의 발행에 있어서 ECB 만이 배타적인 허가권을 갖는다는 점이다.⁽⁹⁾

다음, EMU는 단계별로 실행되는데 제 2 단계는 1994년 1월부터 시작된다. 즉 제 1 단계에 해당하는 1993년 말까지 회원국들은 經濟政策, 특히 物價安定과 公共財政面에서의 접근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적 성과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단계는 일종의 준비기간으로서 이 기간중 회원국들은 中央銀行의 獨立을 추진하고 ECU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바스켓에 포함된 通貨의 가중치를 고정시키게 된다.

제 2 단계에서는 새로 설치되는 유럽통화기구(EMI: European Monetary Institute)가 EMU를 완성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즉 동 기구는 회원국간 通貨政策의 접근 및 중앙은행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이외에도 EMS의 기능을 관리하고 유럽通貨協力基金(EMCF)을 대체하는 한편 ECU의 利用을 확대하는 방안의 모색 등을 포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최종단계인 제 3 단계로의 移行時期는 執行委員會와 EMI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기관은 제 2 단계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 후 EMU 加入을 희망하는 회원국들이 최소한 다음의 4가지 기준을 포함하는 巨視的 成果에 대한 報告書를 작성하여 理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그 내용은 (1) EC 회원국중 최저 인플레를 보이는 3개국의 평균 인플레이션보다 1.5% 포인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財政赤字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報告書 작성시기 이전 2년간 EMS의 換率메카니즘(ERM)에 의한 범위 내에서 通貨價值가 운영되었고 특히 平價切下를 하지 않았을 것, (4) 회원국중 가장 적정한 長期金利水準을 보이고 있는 3개 회원국의 平均金利보다 2% 포인트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이다.⁽¹⁰⁾

각료이사회는 報告書로 접수한 후 어떤 회원국들이 상기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

(9) '改正文' 第105條 4項

(10) '改正文' 第109條 109F 참조.

부를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불이행회원국(Member States with Derogation)라고 불리운다. EC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되는 유럽理事會(European Council)는 1996년 말까지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EMU의 시행일자를 결정하는데 동 결정이 1997년 말까지 취해지지 않을 때 제3단계, 즉 EMU의 완성은 1999년 1월부터 '자동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1999년에 이르러前述한 ESCB 및 ECB가 본격적으로機能을 갖기 시작하고 회원국 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두 기관의 임원진을 구성한다. 또 ECB가 가동되는 즉시 EMI는 소멸되고 그 기능은 ECB로 이전된다.

또 제3단계가 출발하면서 각료이사회는執行委員會의 제안과 ECB의 자문에 따라 회원국 환율을 고정시키고 회원국 통화를 ECU로 대체하므로써 ECU가 EC單一通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5. ESCB 및 ECB의 機能과 役割

EMU가 완성되는 1999년부터 EC의 通貨政策은 ESCB와 ECB로 대표되는共同體機關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수행되는데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그 독립성에 있다. ECB, 會員國中央銀行 또는 ESCB의 의사결정기관의 임원들은 다른 공동체 기관, 회원국 정부 또는 기타 기구들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이를 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¹¹⁾ 따라서 中央銀行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부 회원국(예로 프랑스)의 경우 이에 맞추어 국내의 필요한法・制度的 또는 관행상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ESCB가 하나의 테두리라면 ECB는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ECB는 독립된 범인체로서 회원국내 최대한 활동을 보장받는데 管理理事會(Governing Council)와 執行理事會(Executive Board)에 의하여 운영된다. 집행이사회 委員과 회원국 中央銀行 총재로 구성되는 管理理事會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단지 増資를 비롯한 일부 중요 안건에 있어서는 ECB 納入資本金의 2/3 및 주주의 1/2 이상 찬성하는 조건 아래 加重投票制가 요구된다.

한편 執行理事會는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는 6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비록 회원국 정상들의 동의가 있어야 임명되나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또 임기가 8년이라는 점에서 순수한共同體公務員의 신분보장이 뒷받침된다.

관리이사회는 通貨目標, 중요 金利體系 및 ESCB 내 通貨供給을 포함하는 공동체 통화정

(11) Protocol on the Statute of the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and of the European Central Bank(이하 '議定書'로 略함) 第7條.

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침을 설정한다. 이러한 결정과 지침에 따라 執行理事會는 운영을 담당하며 회원국 중앙은행에 필요한 指示를 전달한다.⁽¹²⁾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회원국 중앙은행도 ESCB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ECB의 指針과 指示를 따라야 한다. 단지 ESCB의 목적 및 기능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독자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ECB는 통상의 金融市場活動을 할 수 있으며 公開市場操作 및 信用業務와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회원국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원칙을 시달하여야 한다. ECB는 또 통화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회원국내 설립된 信用機關들로 하여금 對 ECB 및 회원국 中央銀行 計定에 있어서 최소한 일정 준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ECB는 공동체 내에서 또는 域外 國家와의 거래에 있어서 전전한 清算・決濟制度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管理理事會는 2/3의 표결방식에 의하여 적절한 통화정책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¹³⁾

끝으로 ECB의 資本金은 50억 ECU이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 회원국 중앙은행만이 出資할 수 있으며 회원별로 인구 및 GDP 등을 기준으로 한 일정한 분담률에 의한 가중치에 따라 納入資本金 규모가 별도로 정해진다.

6. 맷 는 말

이상 마스트리트 合意에서 결정된 經濟・通貨同盟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는데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회원국이 이에 참여하고 또 그 實現可能性이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여건이 변할 수도 있기는 하나 英國은 거의 不參의 의사를 굳히고 있다. 英國은 계속 獨自的인 通貨政策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제3단계로 移行할 때 참여할 경우에만 EC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였다.⁽¹⁴⁾ 또 덴마크는 제3단계 이행에 있어서는 國民投票에 따른 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¹⁵⁾

그 이외 실제로 중요한 것은 회원국들의 經濟的 成果라고 생각된다. 1999년부터 제3단계가 자동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몇 개국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경제・통화동맹이 실

(12) '議定書' 第12條.

(13) '議定書' 第17條.

(14) Protocol on Certain Provisions Relating to the United Kingdom 참조.

(15) Protocol on Certain Provisions Relating to Denmark 참조.

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經濟・通貨同盟의 필요조건으로서 인플레율, 金利水準, 換率 및 재정적자 규모 등의 업격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으려면 회원국간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접근 내지 통일이 불가피하며 이 자체는 또 經濟・社會的 여건의 발전이 비슷해야만 가능하다. 최근 EC의 소위 經濟的 調和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會員國은 독일, 프랑스, 덴마크 및 룩셈부르크 등 4~5개국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회원국이 이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가 경제・통화동맹의 실현에 있어서 관건을 갖고 있다고 본다.

다음, 經濟・通貨同盟이 추진될수록 그만큼 共同體의 권한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회원국의 經濟主權이 포기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미 貿易政策에 있어서 공동체가 域內外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 데 더하여 이제 財政, 金融 및 通貨政策에 있어서까지 그 대상영역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더구나 앞으로 經濟・通貨同盟의 추진과 함께 대부분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加重投票制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특정 회원국의 拒否權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可決內容에 대하여 구속을 받게 된다. 이 자체는 경제통합의 超國家性(supranationality)을 의미하는 한편 執行委員會나 ECB의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이 한층 강화되고 英國이나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이 우려하듯이 새로운 관료주의의 대두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이번 마스트리트 合意를 계기로 독일경제가 經濟政策이나 성과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재확인되었음을 물론 그 영향력이 더욱 支配的이 될 전망이다. 예로 ECU의 가치변동에 있어서 마르크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또 회원국들이 독일의 경제・통화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EC가 단일의 共同通貨政策을 수행하고 ECU를 共同通貨로 사용하게 된다면 국제통화체제의 운영에 있어서 美國에 대응하여 그 영향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우선 EC의 經濟力 특히 對外去來 규모로 미루어 국제통화로서 ECU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지고 國際金融市場에서의 이용 또한 증대될 전망이다. 또 국제유동성의 需給, seigniorage 및 國際인플레 등 제 측면에서 종래 美 달러貨가 누리던 지위에 도전하여 ECU의 역할이나 기능이 크게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880-6387

팩서 : (02)888-4454

參 考 文 獻

- 金世源(1990)：『EC의 經濟·市場統合』，EM文庫，韓國經濟新聞社。
- 李天杓(1990)：『유럽通貨統合과 韓國經濟의 對應：EC統合과 政策對應』，對外經濟政策研究院，세미나 資料 90-01。
- Artis, M.J. (1990) : *European Monetary System*, in A.M. El-Agraa(ed.), *Economics of the European Community*, New York, St. Martin's Press.
- Boccaro, B. ed. (1988) : *La grande Peur de 1992*, Stock, Paris.
- Commission of the EC(1985) :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 _____ (1990) : *Economic and Monetary Union*, Communication of the Commission of 21 August.
- Conseil Européen de Maastricht(1991) : "Ref. B10/91/400," DG 1, Secrétariat, Décember.
- Devinney, T.M., and W.C. Hightower, *European Markets after 1992*, Lexington Books.
- Fair, D.E., and C. de Boissieu (1988)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Integration: The European Dimension*,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Jacquemin, A., and A. Sapir(1989) : *The European Internal Markets*,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son H.G., and A. Swoboda eds. (1973) : *The Economics of Common Currencies*, G. Allen & Unwin Ltd.
- Krauss, M.B. ed. (1972) : *The Economics of Integration*, London, G. Allen & Unwin Ltd.
- Magnifico, G. (1973) :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New York, J. Wiley & Sons.
- _____ (1974) : *L'Europe par la Monnaie*, Paris, Lavauzelle.
- Mattera, A. (1988) : *Un Marché unique européen*, Paris, Jupiter.
- Molle, W. (1990) : *The Economics of European Integration*, Dartmouth.
- Mundell, R.A. (1973) : *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The Economics of Integration*, in M.B. Krauss(ed.), London, G. Allen & Unwin Ltd.